

한국인과 영국인 간 목격자 증언 의향 차이: 의명성과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김 단 희 박 희 진 윤 상 연[†]

경상국립대학교

이 연구는 국내 목격자 진술 제도의 활용 수준이 낮은 이유를 확인하는 동시에, 목격자의 증언 의향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적(한국인 vs. 영국인) 및 익명성(익명 vs. 실명)에 따른 네 가지 조건에 각각 150명씩 할당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범죄사건 목격 경험, 식별 절차 경험, 식별 절차 지식) 및 인식(시민의식, 경찰신뢰) 문항에 응답한 후, 범죄(살인) 사건 목격 시나리오 및 익명/실명 조건 설명을 읽고 증언 의향 척도(5점 리커트)에 응답하였다. 국적에 따른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실제 사건 경험 및 목격자 식별 절차 참여 등 범죄 관련 경험이 더 많았고, 높은 시민의식과 경찰신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가 간 증언 의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및 국내에서 목격자의 증언 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 결과, 관련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국적과 익명성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증언 의향이 높았고, 익명 조건에서의 증언 의향이 실명 조건보다 더 높았다. 또한, 국적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익명 조건에서는 한국인과 영국인 간의 증언 의향 차이가 없었으나, 실명 조건에서는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증언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국인에 비해 한국인의 증언 의향이 낮지만, 신원 노출의 위험이 감소할 경우 증언 의향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의 익명증언 제도와 같은 증인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국에서도 증언 의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목격자 증언 의향, 국가 간 차이, 익명성,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 차이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3037938).

† 교신저자: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501

Tel: 055-772-1262, E-mail: yoonsangyeon@gnu.ac.kr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3년 기준, 주요 도시별 단위 면적당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618.45대, 영국은 209.94대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mparitech, 2023.5.23). 국내의 경우 CCTV 설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170만 대를 초과하였다(행정안전부, 2023).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CCTV 영상이 목격자 진술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판에서의 CCTV 활용 빈도는 2013년 7,890건에서 2020년 24,814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이정원, 2021).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확보된 CCTV 영상이 많을 경우 목격자의 진술 수집이 생략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조성학, 이종섭, 장민환, 이정원, 2022).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격자 진술이 수집되지 않을 경우, 오판 가능성이 24.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이종섭, 2023). 이는 목격자의 증인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핵심적 단서가 될 수 있다(방희선, 2014). 이렇듯 목격자의 협조가 수사와 기소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증인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16). 이러한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증인 본인이나 가족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증인의 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 상황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증인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 268건에서 2021년 434건으로 급증했다(이충민, 박호정,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인 보호 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와 그 가족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복을 당할 우려’라는 모호한 요건을 법 적용의 전제로 삼고

있어 실제 보호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된다(차종진, 2024).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 역시 증언 거부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증인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양경규, 2010). 나아가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구조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해, 피해자와 증인의 법적·심리적 보상 체계도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세계일보, 2023.10.22).

이에 반해, 영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증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UK Protected Persons Service(UKPPS)”는 위협 수준을 평가하여 주거지 이전, 법정 내 별도 출입구 마련, 신원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Ministry of Justice, 2012). 이러한 보호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증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제도의 보호를 받은 증인들이 이 제도 덕분에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성도 입증된 바 있다(Fyfe & McKay, 2000; GRETA, 2020).

이러한 현황과 제도적 차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목격자 진술 제도의 활용 수준이 낮은 배경을 확인하고, 증언 의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익명성이 증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익명성 보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익명성 보장이 한국 사회에서 증언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증인 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격자 증언 의향

목격자 진술은 범죄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개인이 자신의 기억에 기반하여 보고한 진술을 의미하며(이승진, 2022), 과거부터 대부분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어 왔다. 과학수사가 일반화된 현대에서도 목격자 진술은 여전히 중요한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의 수사 방향 설정은 물론, 범인의 검거 및 기소, 공판 절차에서의 사실 규명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혁준, 서종한, 2023; Murphy & Barkworth, 2014). 특히 목격자 진술에 기반한 범인 식별은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박종선, 2007).

이처럼 목격자의 협조는 범죄의 성공적인 수사와 기소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는 증인의 협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UNODC, 2016). Dedel(2006)은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 결과를 우려해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불안은 종종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실제로 증인은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신변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 협조를 회피하거나 이미 제공한 협조를 철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Demir, 2017).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 신고자 및 증인 중 일부는 증언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양경규, 2010). 이러한 정서적 부담은 증언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증언 의향과 관련된 실증 연구는 199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가 유일하다(조병인, 1999).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의 평온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범죄 수사에 협력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라는 문항에는 48.3%가 동의하였다. 이는 국민 다수가 범죄 예방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범죄 수사 과정에 대한 협력 의무에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민 대다수가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자발적 협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병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태도는 목격자나 신고자가 증언 이후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특히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협조에 대한 시민의 책임 의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변 보호에 대한 제도적 확신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 협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신고 및 수사 협력 과정 전반에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증인의 협조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이 되며, 나아가 범죄 예방 및 사법 정의 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양경규, 2010).

익명성

익명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증인의 신원이 재판부에는 공개되지만 피고인 측에는 비공개되고, 신원 외의 진술 내용에 대한 교차신문권은 보장되는 보호조치로 정의된다(최희재, 이준기, 김정원, 2009; Chinkin, 1997; Leigh, 1997). 익명성은 특히 범죄 목격자의 신고 및 증언 의향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더 많은 개인이 범죄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icksa, 2014). 이는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의 위협으로 인해 고소·고

발·신고 및 증언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성이 갖는 실질적 효과를 보여준다(신승희, 2010). 실제로 잠재적 신고자는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Rabaiotti & Smith, 2024).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보복 범죄의 두려움 없이 진술하거나 증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박광민, 강석구, 2009). 예컨대 학교폭력 예방 전략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관용 정책, 보안 강화 등 전통적 접근은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칙'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Messman et al., 2024). 이에 반해 익명 보고 시스템(Anonymous Reporting Systems, ARS)은 학생들이 폭력 사건이나 그 전조에 대한 정보를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미국 21개 주에서는 ARS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대응 및 폭력 예방에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익명성은 목격자의 개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증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언 과정에서 익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다. 2008년 형사 증거법을 통해 익명증언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2009년 검시관 및 사법법(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정비를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김한수, 2011). 이 제도는 증인의 보호 필요성, 공익,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보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명증언을 허용하며, 실무적으로는 가명 사용, 물리적 차폐, 목소리 변조 등의 다양한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영국은 1933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1992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특정 증인에 대한 신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현재도 익명성

을 중심으로 한 증인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Priyanka, 2024).

반면, 한국의 증인 보호 제도는 익명성 보장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증인에게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진술 의무 등을 강조하지만, 신변 보호에 대한 제도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양경규, 2010). 현재 시행 중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신변 보호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신원 노출 위험이 높으며,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광민, 강석구, 2009; 차종진, 2024). 무엇보다, 특신법은 보복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 및 실질적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최기남, 2016).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총 1,575건에 달하며, 2018년 268건에서 2021년 43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충민, 박호정, 2023).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실제 국민들의 신고 및 증언 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k, Blenkinsopp, Oktem 그리고 Omurgonulsen(2008)의 다국적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익명성이 보장될 때 고발 의향이 높아지는 반면, 영국인은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고발 의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증언 기피 현상이 실명 공개로 인한 신변 위협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증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명성 보장과 실질적 보호 조치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의 국가 간 차이

심리학의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 같은 문화적 변인을 활용해 왔다(Aaker & Sengupta, 2000; Han & Shavitt, 1994; Kim &

Markus, 1999; Triandis, 1989).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이 확인되고(Kitayama & Yu, 2020; Kitayama et al., 2019), 국가 간 교류와 시대의 변화 속에 개인의 문화적 특성도 변화하면서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은 흔들리고 있다(Huang et al., 2023; Matsumoto, Kudoh, & Takeuchi, 1996).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평가되었던 가운데, 개인주의 성향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두 성향의 공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동노, 2023).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 심리적 태도나 행동 차이를 단일한 문화적 축으로만 설명하는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련된 변수를 통해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심리학적 범주를 넘어, 형사사건 관련 제도적 환경과 시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증언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영국인 간 증언 의향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이를 주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사건 목격 경험, 식별 절차 경험, 식별 절차 지식, 시민의식, 경찰신뢰와 같은 경험적 및 인식적 요인이 국적과 증언 의향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익명성에 따른 증언 의향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문화적 요인에 대한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제도적 맥락과 개인의 경험이 증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한국과 영국 간 형사사건 관련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범죄율을 비교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의 총 범죄 발생 건수는 약 850만 건에 달한 반면(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한국은 약 150만 건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이를 인구수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약 29.4건, 영국

은 약 139.4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영국의 범죄율이 한국보다 약 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범죄율의 차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형사사법 절차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민들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절차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Selner-O'Hagan, Kindlon, Buka, Raudenbush, & Earls, 1998). 따라서 범죄율이 높은 영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범죄 사건을 보다 빈번하게 목격하거나 이에 연루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뿐 아니라 관련 인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박순진, 2012), 향후 증언 의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범죄사건 목격 경험, 식별 절차 경험, 식별 절차 지식 등을 주요 관련 변수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영국 간 시민의식과 경찰신뢰 수준을 비교하여 두 나라의 형사사법절차 관련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시민의식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권석만, 2012; 박균열, 2013), 증언 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시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은 증언 의향을 높이는 주요 하위 요소로 꼽힌다. 시민참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공유, 부패 고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적 태도를 포함한다(박가나, 2009; 허경미, 2011).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는 절반 정도(55.7%)가 직장이나 소속 집단 내 부정부패를 인지했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영국 응답자는 대다수(85%)가 그렇게 응답하였다(세계일보, 2017.6.14). 이는 영국 시민이 한국 시민에 비해 공동체를 위한 행동에 더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시민이 경찰에 갖는 인식과 태도, 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홍승표, 라광현, 2019; Jackson & Sunshine, 2007). 경찰신뢰는 ‘효과적 신뢰’와 ‘관계적 신뢰’로 구분되며, 효과적 신뢰는 경찰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시민이 느끼는 신뢰를 의미하고 관계적 신뢰는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기반한 신뢰를 의미한다(Tyler, 2005). 일반적으로 경찰신뢰가 높을수록 시민들은 경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홍승표, 박종승, 2019). 2024년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56%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42%로 영국이 한국보다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신뢰의 차이는 범죄 피해 신고율과 같은 시민의 역할 수행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회적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범죄 피해 신고율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박철현, 2018). 반대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타인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 협조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도균, 2013). 따라서 시민의식과 경찰신뢰 역시 국가 간 중언 의향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인식적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중언 의향의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 단순한 문화적 요인에서 벗어나, 익명성이라는 제도적 조건이 중언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범죄사건 목격, 목격자 식별절차 경험, 목격자 식별절차 지식) 및 인식(시민의식, 경찰신뢰)과 같은 현실적 ·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언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국적과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영국이라는 상이한 법적 ·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간의 중언 의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익명성 조건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따라 중언 의향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국적에 따라 중언 의향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 익명성 여부에 따라 중언 의향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4. 국적과 익명성은 중언 의향 수준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국적: 한국인 vs. 영국인) × 2(익명성: 익명 vs. 실명)의 4가지 조건에 따라 각 집단별로 150명씩 할당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2025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 동안 온라인 실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건별로 150명의 데이터를 얻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영국 모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했다(각 조건마다 150명(25%)). 연령대 비율도 한국과 영국 모두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조건마다 75명(25%)으로 국가 간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국적별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162명, 54.0%), 고등학교 졸업 이하(60명, 20.0%), 전문대 졸업(49명, 16.3%), 대학원 졸업 이상(29명, 9.7%) 순으로 많았다. 영국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113명, 37.7%), 고등학교 졸업 이하(85명, 28.3%), 4년제 대학 졸업(59명, 19.7%), 전문대 졸업(43명, 14.3%) 순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국적별 참가자가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없다’

가 98.7%(296명), ‘있다’가 1.3%(4명)였으며, 영국에서도 ‘없다’가 90.0%(270명), ‘있다’가 10.0%(30명)로 조사되었다. 즉 한국과 영국 모두 대다수의 응답자가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범죄사건 목격 경험. 범죄사건 목격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분형(예: 1, 아니오: 2) 응답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범죄사건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목격자 식별절차 경험. 목격자 식별절차 경험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분형(예: 1, 아니오: 2) 응답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목격자 식별절차의 경험이 있습니까?”

목격자 식별절차 지식. 목격자 식별절차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분형(예: 1, 아니오: 2) 응답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목격자 식별절차 혹은 범인 식별절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사사법절차 관련 인식

시민의식.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의식 척도들을 재구성한 시민의식 문항(이재학, 2020) 중 증언 의향과 관련된 참여 의식 5문항과 공동체 의식 5문항을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시민의식 질문지는 참여 의식 문항 5개와 공동체 의식 문항 5개가 포함된 총 1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참여 의식 문항 예시는 “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며, 공동체 의식 문항 예시는 “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돋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다. 시민의식 척도는 최고 50점, 최저 10점이며 50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참여 의식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 공동체 의식의 내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합친 시민의식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경찰신뢰. 경찰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Tyler (2005)에 의해 개발된 경찰신뢰를 홍승표(2020)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경찰신뢰의 질문지는 효과적 신뢰 문항 8개와 관계적 신뢰 문항 3개가 포함된 총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효과적 신뢰 문항의 예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경찰에 의해 잘 보호되고 있다.”이며, 관계적 신뢰 문항의 예시는 “경찰은 시민을 고려하여 활동한다.”이다. 경찰신뢰 척도는 최고 55점, 최저 11점이며 55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의 경찰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효과적 신뢰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58, 관계적 신뢰의 내적합치도는 .84으로 나타났다. 효과적 신뢰와 관계적 신뢰를 합친 시민의식의 내적합치도는 .77로 나타났다.

증언 의향

증언 의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11점 리커트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문항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에서는 익명성 변인(익명 vs. 실명)을 조작하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어느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거리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온몸에 문신이 있었으며, 30cm가량 되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당신은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지역 뉴스에서 경찰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고,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목격자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 경찰은 절차상 목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익명조건) 단, 경찰은 절차상 목격자의 신분은 밝게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실명조건)

※ 실제 연구에서는 위 문장을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하였다.

연구 절차

이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GIRB-A25-NY-0005). 이 연구의 목표는 국가 간 익명성에 따른 증언 의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증언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 사건 목격, 목격자 식별절차 경험, 목격자 식별 절차 지식에 대해 세 가지 문항(1:예, 2:아니오)으로 측정하였고 인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경찰 신뢰(5점 리커트 척도, 11개 문항)와 시민의식(5점 리커트 척도, 10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익명성에 따른 시나리오의 2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작위로 노출시켰다. 노출 후 응답자들은 시나리오의 사건을 목격했을 경우 증언할 의향을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 문항에 응답하였다.

분석 방법

이 연구는 SPSS Statistic 27.0을 사용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확인하기 위해 d 를 사용하였다¹⁾. 다음으로 Python 3.12.4.을 사용하여 증언 의향에 대한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적과 익명성이 증언 의향에 미치는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보고하기 위해 Cohen's n_p^2 를 사용하였다²⁾.

결과

국적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분석

국적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에 따라 범죄사건 목격 경험, 식별절차 경험, 식별절차 지식 모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인 응답자보다 영국인 응답자가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국적에 따른 인식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분석

다음으로 국적에 따른 시민의식과 경찰신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의식($t=582.631$, $p<.001$, $d=.654$), 경찰신뢰($t=598$, $p<.001$, $d=.63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

1) Cohen's d 값은 .2정도면 효과가 작은 수준이고 .5정도면 중간 수준, .8정도면 큰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다(Cohen, 1977).

2) Cohen's의 n_p^2 값은 .01정도면 효과가 작은 수준이고 .06 정도면 중간 수준, .14정도면 큰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다(Cohen, 1992).

표 1. 국적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차이 비교(N=600)

종속변수	집단	표본 수	국적(%)		$\chi^2(I)$	P
			한국	영국		
범죄사건 목격 경험	예	227	51(17.0)	176(58.7)	110.723***	.000
	아니오	373	249(83.0)	124(41.3)		
식별절차 경험	예	117	23(7.7)	94(31.3)	53.522***	.000
	아니오	483	277(92.7)	206(68.7)		
식별절차 지식	예	314	88(29.3)	226(75.3)	127.237***	.000
	아니오	286	212(70.7)	74(24.7)		

*** $p<.001$

표 2. 국적에 따른 인식 차이 비교(N=600)

종속변수	집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t(df)$	P	d
			한국	영국			
시민의식	한국	300	3.51	.60	-3.51(582.631)***	.000	.654
	영국	300	3.70	.71			
경찰신뢰	한국	300	3.01	.61	-5.44(598)***	.000	.631
	영국	300	3.29	.65			

*** $p<.001$

국인 응답자가 한국인 응답자보다 시민의식, 경찰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증언 의향에 대한 국적과 익명성의 공변량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증언 의향에 대한 두 가지 요인(국적, 익명성)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적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과 인식을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을 수행하기 전, 등분산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05$ 로 등분산 가정이 위배되어 공변량분석에서 HC3(Heterosc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Type 3)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공변량분석 결과, 범죄사건 목격 경험, 식별

표 3. 증언 의향에 대한 국적, 익명성의 기술통계(N=600)

독립변인	수준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국적	한국인	300	6.18	2.72	-.45	-.45
	영국인	300	7.87	2.21	-1.38	2.09
익명성	익명	300	8.01	1.93	-1.15	1.67
	실명	300	6.04	2.84	-.40	-.60

절차 경험, 식별절차 지식, 시민의식, 경찰신뢰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모형은 증언 의향에 대해 37.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R^2=.372$, adj. $R^2=.364$). 국적($R1,591=25.62$, $p<.001$, $n_p^2=.032$)과 익명성($R1,591=107.93$, $p<.001$, $n_p^2=.136$)의 주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인 응답자($M=6.18$, $SD=2.72$)보다 영국인 응답자($M=7.87$, $SD=2.21$)가, 실명 조건($M=6.04$, $SD=2.84$)일 때보다 익명 조건($M=8.01$, $SD=1.93$)일 때 증언 의향이 더 높았다. 이원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국적과 익명성의 상호작용 항($R1,591=14.59$, $p<.001$, $n_p^2=.01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유의하게 나온 국적과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적과 익명성의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익명 조건에서 한국인 응답자($M=7.38$, $SD=2.07$)와 영국인 응답자($M=8.01$, $SD=1.93$) 간의 증언 의향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R1,293=3.44$, $p=.065$, $n_p^2=.010$). 반면 실명 조건에서는 영국인 응답자($M=7.11$, $SD=2.50$)가 한국인 응답자($M=4.97$, $SD=2.78$)보다 증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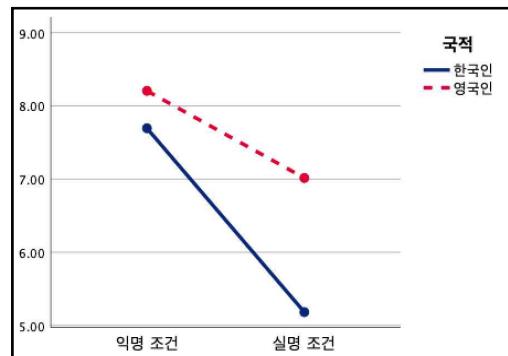


그림 1. 증언 의향에 대한 국적과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

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R1,293=38.13$, $p<.001$, $n_p^2=.106$).

논의

목격자 증언에 관한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목격자 증언 의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익명성 여부에 따라 한국인과 영국인 간 증언 의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표 4. 증언 의향에 대한 국적, 익명성의 공변량분석(N=600)

변수	df	F	P	n_p^2
범죄사건 목격 경험	1	.24	.623	.000
식별절차 경험	1	5.65*	.018	.007
식별절차 지식	1	.29	.591	.000
시민의식	1	17.25***	.000	.022
경찰신뢰	1	30.72***	.000	.039
국적(A)	1	25.62***	.000	.032
익명성(B)	1	107.93***	.000	.136
A × B	1	14.59***	.000	.018
집단 내 오차	591	(2583.922)		

A = 국적, B = 익명성

* $p<.05$, ** $p<.001$

국내 목격자 식별 절차에 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적에 따른 증언 의향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국가 간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 수준의 차이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영국인 응답자는 한국인 응답자에 비해 범죄사건 목격 경험 및 목격자 식별절차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절차에 대한 인지 수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인이 형사사법 관련 경험을 더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식 수준에 있어서도, 영국인 응답자는 한국인 응답자보다 시민의식 및 경찰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형사사법 관련 경험과 더불어 영국인이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을 공변인으로 설정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변인으로 설정한 변인들 중 시민의식, 경찰신뢰와 같은 인식 요인은 증언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변수 가운데에서는 목격자 식별절차 경험만이 증언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그 효과 크기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Cohen, 1992).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단순한 경험 자체보다는 해당 절차에 대한 인식이 증언 의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적과 익명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국인 응답자가 한국인 응답자보다 증언 의향이 높았고, 실명 조건보다 익명 조건일 때 증언 의향이 더 높았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 한국인과 영국인 간의 증언 의향에 차이가 없었지만, 실명일 때는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증언 의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한국인의 경우 익명성이 증언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단순한 경험 유무보다는 그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증언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실제 범죄피해의 객관적 위험성을 반드시 반영하지 못하며(Ferraro & Grange, 1988; Smith & Hill, 1991),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2). 즉, 실제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보다 해당 절차에 대한 인식이 증언 의향을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영국 간의 역사적·제도적 차이는 시민의식과 경찰신뢰 등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서구 사회는 오랜 역사적 발전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중시하는 시민의식이 확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지향적 경찰 제도가 뿌리내려 높은 경찰신뢰를 형성해왔다(신현기, 2010; 최선우, 2016; 한겨례신문, 2020.7.25). 반면,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시민의식이 강화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의 득세와 정치적 예속 경험 등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김보환, 2006; 김진혁, 2007; 정상완,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한 형사사법절차 경험의 유무보다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인식 차이가 증언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만, 여기에서 문화적 인식의 차이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등 거시적 문화차원(Hofstede, 1991, 2001)보다 시민의식이나 경찰신뢰처럼 공적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된 인식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증언 의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익명성이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이은곤, 이애리, 김경규, 2015). 한국 사회에서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OECD, 2024), 증언이 개인의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언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익명성과 관계없이 증언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의 시민의식과 경찰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영국인들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로 인해 증언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김도균, 2013; OECD, 2024).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언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한국과 영국 간의 증언 의향 차이가 사라진다는 점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국에서도 증언 의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익명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증인 보호 정책을 개선하여 증인들이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서나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이학영 등, 2025). 이는 절차적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범죄 신고율을 높이고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두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익명성에 따른 증언 의향의 차이를 분석했지만, 다른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각 국가의 법률 체계나 사회적 규범, 문화적 배경이 증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교문화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문화적 변수(예: 집단주의, 개인주의)를 직접 확인하거나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가 간 증언 의향의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 제도적 환경과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심리학적 접근과 차별화되지만, 문화적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증언 의향을 측정함에 있어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단일 문항(11점 리커트)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증언 의향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단일 문항은 응답자의 복합적인 태도와 행동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이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Gardner, Cummings, & Dunham, 1993; Wanous, Reichers, & Hudy, 1997). 향후 연구에서는 “경찰에 자발적으로 증언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기꺼이 협조할 것이다”와 같은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여 증언 의향의 다차원적 측정을 시도하고, 필요에 따라 “증언을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낀다”, “긴장된다”, “두렵다”와 같은 정서적 측면도 포함시켜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증언 의향 차이에 미치는 형사사법 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각 국가의 사회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증언 의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에서 나타나는 증언 의향의 차이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여 익명성이 증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법률 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요인 외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증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더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체계는 개인의 행동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는 증언 의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증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증언 의향을 높이고 범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소개

김단희는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 및 범죄심리 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문화에 따른 목격자 식별 절차 인식의 차이와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박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 및 범죄심리 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윤상연은 고려대학교에서 문화및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범죄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를 기초로 형사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심리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2).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 심리학의 관점. 학지사.
- 권혁준, 서종한 (2023). 복수 가해자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 정확성 재고: 타임라인 기법의 검증. 경찰학연구, 23(3), 5-30.
- 김도균 (2013).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법학, 54(3), 543-599.
- 김동노 (2023).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 사회이론, 63, 153-196.
- 김보환 (2006). 한국경찰의 패러다임 변화와 역사기록의 쟁점 및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8(1), 3-24.
- 김은영 (2012).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여성: 성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한국치안행정 정논집, 8(4), 169-193.
- 김진혁 (2007). 한국경찰 60년, 평가와 전망. 법학 연구, 28, 443-463.
- 김한수 (2011). 영국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273-306.
- 박광민, 강석구 (2009).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강화방안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신변 보호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7(2), 81-108.
- 박근열 (2013).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실태조사 내용체계와 향후 과제. 優理研究, 93, 1-25.
- 박순진 (201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형사정책연구, 91, 233-265.
- 박종선 (2007).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중앙법학, 9(3), 243-266.
- 박철현 (2018). 법적 냉소주의와 침입질도피해의 신고. 공공정책연구, 34(2), 135-150.
- 방희선 (2014). 올바른 진술증거의 확보방안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42, 69-151.
- 세계일보 (2017.6.14). [갈 길 먼 공익제보] 양국 시민의식 비교조사해보니.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614003427>
- 세계일보 (2023.10.22). [단독] 범죄신고자구조금 2년째 '유명무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251357>
- 신현기 (2010).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7(1), 3-26.
- 신승희 (2010). 미국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프로그램 연구-Witness Protection Program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7, 184-230.
- 양경규 (2010).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7(3), 281-303.
- 이승진 (2022). 목격자 증언 맥락에서 정서의 기능에 관한 서술적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5), 267-278.
- 이은근, 이애리, 김경규 (2015).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익명성이 가상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 217-241.
- 이재학 (2020). 마을공동체 사업참여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 (2021). 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과 시사점. *형사정책*, 33(3), 127-159.
- 이정원, 이종섭 (2023). 국내 오판의 현황과 특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4), 31-67.
- 이충민, 박호정 (2023). 보복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교정상담학연구*, 8(1), 5-33.
- 이학영(외 11명) (2025. 04. 2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1).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r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4F0D5E3A1Z1X5W4E4D1B6C6Y3W9
- 정상완 (2001).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체계. *한국행정사학지*, 10(0), 285-311.
- 조병인 (1999).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성학, 이종섭, 장민환, 이정원 (2022).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활용 범인식별절차의 암시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1(3), 203-226.
- 최선우 (2016). 영국경찰의 정당성 확보와 저하에 관한 역사적 연구. *경찰학논총*, 11(4), 155-188.
- 차종진 (2024).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6(4), 105-142.
- 최기남 (2016).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6(7), 129-137.
- 최희재, 이준기, 김정원 (2009).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적, 사회적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0(1), 63-74.
- 통계청 (2024).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5lsKvMK6B0kPxYlk8DOziw0.node10?bbsId=BBSMSTR_00000000008&nttId=106346#none
- 한겨례 신문 (2020.7.25). 검찰개혁, 영국 경찰개혁에 답 있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179.html
- 허경미 (2011). 비행 청소년의 시민 참여의식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2), 127-150.
- 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 홍승표 (2020). 경찰권 강화에 대한 시민 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경찰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경찰학논총*, 15(3), 9-31.
- 홍승표, 라광현 (2019). 경찰지시 순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1(6), 203-228.
- 홍승표, 박종승 (2019). 시민의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61, 353-376.
- Aaker, JL., & Sengupta, J. (2000). Additivity versus attenuation: The role of culture in resolution of information in the discongruity.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9(2), 67-82.
- Chinkin, C. M. (1997). Due process and witness anonym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91(1), 75-79.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ev.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mparitech. (2023.5.23). Surveillance camera statistics: Which are the most surveilled cities? <https://www.comparitech.com/vpn-privacy/the-worlds-most-surveilled-cities/>
- Dedel, K. (2006)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pecific guides series: Witness intimidation* (No. 42).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https://popcenter.asu.edu/sites/default/files/sites/default/files/problems/pdfs/witness_intimidation.pdf
- Demir, M. (2017). The perceived effect of a witness security program on willingness to testif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8(1), 62-81.
- Ferraro, K. F., & Grange, R. L. (1988).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 70-101.
- Fyfe, N. R., & McKay, H. (2000). Police protection of intimidated witnesses: A study of the strathclyde police witness protection programme. *Policing and Society*, 10(3), 277-299.
- Gardner, D. G., Cummings, L. L., & Dunham, R. B. (1993). Multiple-item versus single-item measures of attitudes: An empirical comparis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1-10.
- Group of Experts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20). *Reply from the united kingdom to the questionnaire for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by the Parties (Third evaluation round)*. [GRETA(2018)26_GBR_rep]. GRETA. <https://rm.coe.int/reply-from-the-united-kingdom-to-the-questionnaire-for-the-evaluation-/16>
- Han, S. p., & Shavitt, S. (1994). Persuasion and culture: Advertising appeal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societ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4), 326-350.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 Hill.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Sage.
- Huang, Z., Jing, Y., Yu, F., Gu, R., Zhou, X., Zhang, J., & Cai, H. (2018). Increasing individualism and decreasing collectivism? Cultural and psychological change around the globe. *Advances in Psychological Science*, 26(11), 2068-2080.
- Jackson, J., & Sunshine, J. (2007).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2), 214-233.
-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85-800.
- Kitayama, S., Karasawa, M., Grossmann, I., Na, J., Varnum, M. E., & Nisbett, R. E. (2019). *East-west differences in cognitive style and social orientation: Are they real*. PsyArXiv.
- Kitayama, S., & Yu, Q. (2020). Mutual constitution of culture and the mind: Insights from cultural neuroscience. In L. Kirmayer, C. Worthman, S. Kitayama, R. Lemelson, & C. Cummings (Eds.), *Culture, mind, and brain: Emerging concepts, models, and applications* (pp. 88-119).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igh, M. (1997). Witness anonymity is inconsistent with due proces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1(1), 80-83.
- Matsumoto, D., Kudoh, T., & Takeuchi, S. (1996). Changing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 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ulture & Psychology*, 21(1), 77-107.
- Messman, E., Heinze, J., Hsieh, H. F., Hockley, N., Pomerantz, N., Grodzinski, A., Scott, B., Goldstein, N., & Zimmerman, M. (2024). Anonymous reporting systems for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A systematic review. *Health Education & Behavior: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Public Health Education*, 51(1), 62-70.
- Ministry of Justice. (2012). *UK wide protection for witnesses as new national scheme launched*.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wide-protection-for-witnesses-as-new-national-scheme-launched>
- Murphy, K., & Barkworth, J. (2014). Victim willingness to report crime to police: Does procedural justice or outcome matter most? *Victims & Offenders*, 9(2), 178-204.
- Nicksa, S. C. (2014). Bystander's willingness to report theft, physical assault, and sexual assault: The impact of gender, anonymity, and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2), 217-236.
- OECD. (2024).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4 results - Country notes: Korea. *OECD*.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rvey-on-drivers-of-trust-in-public-institutions-2024-results-country-notes_a8004759-en/korea_ab1a95c7-en.html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Population estimates for england and wales: mid-20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bulletins/populationestimatesforenglandandwales/mid2023>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6). Victim assistance and witness protection. *United Nations*.
- <http://www.unodc.org/unodc/en/organized-crime/witness-protection.html>
- Park, H., Blenkinsopp, J., Oktem, M. K., & Omurgonulsen, U. (2008). Cultural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different forms of whistleblowing: A comparison of South Korea, Turkey, and the UK.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 929-939.
- Priyanka, C. (2024). Witness protection in comparative conspectus of USA, UK and India. *Law Foyer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rinal Legal Research*, 2(3), 299-315.
- Rabaiotti, E., & Smith, R. (2024). The power of anonymity: An exploratory study into the role of crime stoppers in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rime in England and Wales. *The Police Journal*, 97(2), 279-296.
- Selner-O'Hagan, M. B., Kindlon, D. J., Buka, S. L., Raudenbush, S. W., & Earls, F. J. (1998). Assessing exposure to violence in urban you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2), 215-224.
- Smith, N., & Hill, G. (1991).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and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cus*, 24(4), 315-327.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yler, T. R. (2005). Policing in black and white: Ethnic group differences in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3), 322-342.
-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is a single-item mea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2), 247-252.

1 차원고접수 : 2025. 05. 15.
수정원고접수 : 2025. 06. 26.
최종제재결정 : 2025. 06. 27.

Differences in Witness Testimony Willingness between Koreans and British: A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with Anonymity

Danhee Kim Huijin Park Sangyeon Y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asons for the low utilization of the witness testimony system in Korea while also seeking ways to enhance witnesses' willingness to testify. An onlin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600 participants, with 150 individuals allocated to each of the four conditions based on nationality (Korean vs. British) and anonymity (anonymous vs. real-name). Participants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their experienc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criminal cases (experience witnessing crimes, experience with identification procedures, knowledge of identification procedures) and perceptions (civic consciousness, police trust). They then read a crime (murder) scenario and an explanation of the anonymity/real-name condition and responded to a willingness-to-testify scale (5-point Likert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experiences and perceptions based on nationality. British participants had more actual experience with incidents and participated more in 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compared to Korean participants, and they exhibited higher civic consciousness and police trust. These results provide explanations for the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testify between countries and offer strategic insights for improving the willingness to testify among witnesses in Korea. Furthermore, an analysis of covariance using criminal case-related experiences and perceptions as covariates confirmed the main effects of nationality and anonymity,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British participants showed a higher willingness to testify than Korean participants, and the willingness to testify was higher under the anonymous condition than the real-name condition. Additionally,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nationality and anonymity was observed. Under the anonymous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willingness to testify between British and Korean participants. However, under the real-name condition, British participan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willingness to testify than Korean participants. This suggests that although Koreans generally have a lower willingness to testify compared to British individuals, the willingness increases when the risk of identity exposure is re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witnes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an anonymous testimony system in Korea, suggesting the potential to increase willingness to testify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Key words : witness testimony willingness, cross-national difference, anonymity, differences in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